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3. 18

다. 상 정 일 자 : 2002. 3. 18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 신 중

나. 개정사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 조례를 개정코사함.

다. 주요내용

- 제35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중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사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제50조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1월31일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기간과 일치하기 위하여 5월31일지로 변경하였으며,
- 제65조 “도축세의 특별징수인의 지정” 제2항중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에서 처리한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 제89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중 건축물(5월1일)과 토지(6월1일)의 과세기준일이 다르던 것이 매년 6월1일로 변경하였으며, 재산세와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6월16일부터 6월 30일에서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납기를 조정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및 전라남도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게 됨.
- 안 제14조의 2와 제14조의 3은 신설규정으로서 전라남도준칙안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서 본군 특히 읍지역에의 주차장 난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그 감면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할 정도인가는 보다 깊이있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임.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사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중 “위원회 및 각분과위원”을 “위원회”로 한다.

제35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원장자

제49조1항중 “1월31일”을 “5월31일”로 한다.

제65조2항중“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장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89조중 건축물 과세기준일 “매년5월1일”을 “매년6월1일”로하고, 건축물 납기 “매년6월16일~6월30일”을 “매년 7월16일~7월31일”로한다.

조례 제1674호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3호중

“금액으로 하고, 2007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을 “금액”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① 생략 ② ③ ④ ⑤ 생략 ⑥ 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① 현행과 같음 ② ③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5조(납세의부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p>	<p>제35조(납세의부자)①----- ----- -----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으로 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p>
<p>제49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략)</p>	<p>제49조(신고와납부) ①----- -----5월 31일----- ----- ----- ----- ②(현행과 같음)</p>
<p>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생략) ②소·돼지를 도축장의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 ----- -----</p>

현 행			개 정		
제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도시계획 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 과 같다.			제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 세 기 준 일	납 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 6월30일	-----	매년 6 월 1 일	매년7월16일 ~ 7월31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 7월31일	-----	-----	----- -----
부칙 (2001. 2.26로 1674호) 제2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생략 1. (생략) 2. (생략) 3.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007년 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부칙 (2001. 2.26로 1674호) 제2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 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 -----금액		